

<p>제2025-43호 2025년 5월 12일(월)</p>	<p>시  보</p> <p>여수시</p>	<p>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홍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고 시

- 여수시 고시 제2025-23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 1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5-1483호 도로지정 공고(웅천동 1577-3번지 외 5필지 상 건축허가 관련, 웅천동 1553-3번지 외 4필지) 2

읍 면 동

- 여수시 화정면 고시 제2025-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(여산처리장) 4
- 여수시 화양면 공고 제2025-11호 2025년도 장등해수욕장 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5

기 타

- 여수시 훈령 제429호 여수시 행정서비스현장 개정 및 운영 규정 전부 개정령 6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여수시 고시 제2025 - 235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을 승인(신고)하고 고시합니다.

승인 (신고) 번호	실시계획 승인 (신고)수리	시 행 자		사업착수 예 정 일	사업준공 예 정 일	점용·사용 장 소	공사내용
		주 소	성 명				
2025-3 (2025. 1. 23.)	2025. 5. 9.	여수시 시청로 1 (학동)	여수시장 (섬발전지원과)	실시계획 승인일	'26.3.2.	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산142번지 일원	화정면 여자리 산142번지 앞 방파제 연장공사

2025. 5. 9.

여 수 시 장

도로 지정 공고

여수시 응천동 1577-3번지 외 5필지(1577-4, 1577-7, 1579-3, 1579-5, 1579-7)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,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위 치 : 여수시 응천동 1553-3번지 외 4필지(1552-1, 1545-1, 1545, 1444-2)
2. 도로면적 : 818m²
3. 도로길이 : 현황도 참조
4. 도로 폭 : 현황도 참조
5.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

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면 적(m ²)		비 고
				공부면적	지정면적	
	계			1,867	818	
	응천동	1553-3	도	128	57	
		1552-1	도	382	215	
		1545-1	도	647	312	
		1545	도	295	39	
		1444-2	도	415	195	

6. 관련도서 : 별첨참조

2025. 5. .

여 수 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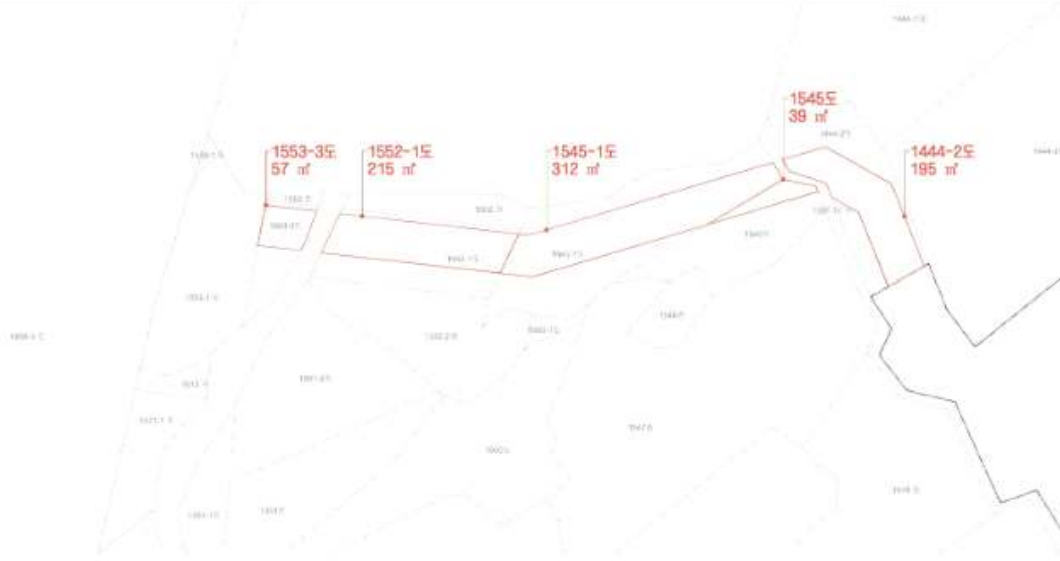
[별 첨]

현 황 도



위치도

측 척 <임 의>



현황도

측 척 [] 1/600, [] 1/1,200

화정면 고시 제2025 - 010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을 고시합니다.

승인번호 (승인일)	점용·사용 장소	점용·사용 목적	점용·사용 면적(㎡)	점용·사용 기간	피 승인 자	
					성 명	주 소
2025-010 (25.5.12.)	화정면 낭도리 1272-5 일원 공유수면	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공 사 방류관로	0.259㎡ (L=5.17m, D=50mm)	'25. 5. 12. ~ '55. 5. 11.	여수시 시청로1	여수시장 (하수도과)

2025. 5. 12.

화 정 면 장

여수시 화양면 공고 제2025 - 11호

해수욕장 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

최종합격자 공고

2025년도 장등해수욕장 주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채용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5월 9일

여 수 시 장

1 최종합격자 명단 : 1명

○ 응시번호 : 1

2 신규채용 등록

○ 등록일시 : 2025. 5. 16.(금) 18:00 까지

○ 등 록 처 : 여수시 화양면사무소 개발팀

3 등록 시 유의사항

○ 지정된 기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화양면사무소(개발팀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☎061-659-1166)

여수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
발령한다.

2025년 5월 8 일

여수시장 *정기영*



여수시 훈령 제421호

붙임 여수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령 1부.

여수시 훈령 제429호

여수시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령

여수시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수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“행정서비스”(이하“서비스”라 한다)라 함은 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·무형의 구체적·실체적인 모든 업무를 말한다.
- 2.“행정서비스 헌장”(이하“헌장”이라 한다)이란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,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,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, 이의 실천을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3.“고객”이란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·기업·단체 등을 말한다.
- 4.“고객만족도”라 함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, 민원인 편의시설 등 시민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① 이 훈령은 여수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·운영하는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·법인·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.

제4조(헌장의 제정) ① 시장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.

② 현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·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현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.

제5조(현장의 제정절차) ① 현장제정안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현장 초안 작성 단계에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현장제정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확정 공표한다.

제6조(현장의 개정) ① 시장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여건의 변화, 고객의 요구사항 수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현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) 현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.

1.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.
2.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.
3. 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.

4.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할 것.
5.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.
6.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절차와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.
7.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과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·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.
8.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부서 간의 상호협력 체제를 유지할 것.
9.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할 것.

제8조(현장의 내용) ① 현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
 2. 명패부착·공무원증의 패용 등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
 3.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
 4.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·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
 5.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그 내용
 6.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
 7.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
 8.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와 보상조치 명시
 9. 현장에 대한 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, 시민에 대한 협조사항 등
- ② 현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상 및 구제조치 명확화) 시장은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, 그 보상방법과 구제절차를 현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고객만족도 조사)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해당 조사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조사내용은 현장 이행실태, 서비스 개선정도, 시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,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④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시조사는 간담회,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⑤ 조사결과는 현장의 개선 및 시정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한다.

⑥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무기명으로 하여 통계법에 의한 비밀을 보장하고, 자료는 조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현장의 공표 및 홍보) ① 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.

1. 시 누리집, 시정소식지 게재
2. 언론매체 활용

3. 홍보자료 작성 고객에게 배포

4.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

② 고객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현장의 이행) ① 현장 운영 부서의 장은 현장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현장 이행에 따른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현장개선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시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현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현장의 합리적인 제정·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현장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시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.

1. 현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2. 현장 내용의 검토

3. 현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

4.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

5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해당 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, 현장 제정부서의 국장, 과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행정 경험이 많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현장의 제정·운영을 총괄하는 주무팀장이 된다.

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~~제14조(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) : 삭제~~

제14조(수당과 여비)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서별 현장 운영실태를 분석·평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현장 시행결과 분석·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.

1. 고객만족도 조사결과
2. 다음연도 현장에 반영·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제시
3.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
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·평가 결과 발생한 개선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.

제16조(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) 평가결과 현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7조(백서의 발간) ① 시장은 현장 이행부서의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시정 백서에 수록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서비스의 개선내용
2. 현장의 제정·개선 현황
3.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
4. 서비스 결과의 확인·점검 및 그 평가결과
5. 우수서비스 부서

제18조(협조요청) 현장총괄담당과장은 이 훈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.

부칙(2025. 5. 8. 규정 제429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